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청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659 취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 고	A
피 고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8. 11. 15.
판 결 선 고	2018. 12.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가. 원고는 2011. 6. 27. 대한민국(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과 국유림인 [redacted]군 B 지상의 국유임산물인 활엽수 외 1종 2014.33㎥(15,011본, 이하 '이 사건 원목'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7. 6. 잔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원목을 지방세법령상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입목'이라고 보아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구체적 산정내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2016. 3. 23.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원고가 취득한 것은 입목이 아닌 원목으로,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취득세 및 농특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법원 2016구합259,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선행소송 계속 중 위 나.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취득세 및 가산세 등의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2016. 7. 8. 원고에게 취득세 1,685,930원(가산세 포함) 및 농특세 168,5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선행소송의 제1심법원은 2016. 9.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통하여 취득한 것은 원목이 아니라, 지방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취득세 부과 대상인 입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선행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선행판결은 원고가 '입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으나, 선행소송과 동일한 쟁점이 문제된 다수의 판결은 이를 입목이 아닌 '벌채를 위한 원목'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와 같이 판단하였다. 비록 원고가 선행소송의 제1심판결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선행판결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의 확정, 원고와 같은 영세한 원목 생산업자를 보호할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그 확정판결과 모순 없는 판단을 함으로써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한 선행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고, 이 사건 소는 선행판결과 당사자가 동일할 뿐만 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니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으로서 그 소송물도 동일하므로,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법원은 선행판결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없고, 비록 동일한 쟁점을 다룬 다른 사건에서 선행판결과 반대의 결론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신우정

판사 김주식

판사 이정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목 록

순번	처분청	처분일	고지서	취득세	농특세
1	[[redacted]군수]	2016.07	갑 4호증의 1	[1,685,930]	[168,590]
2					
3					
4					
소 계				1,685,930	168,590
총 합 계				1,854,52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입목“이란 지상의 과수, 임목과 죽목(竹木)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5. 입목: 1천분의 20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7.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1-18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① 법 제15조 제1항 제7호에서 "그 밖의 형식적인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벌채하여 원목을 생산하기 위한 입목의 취득을 말한다.